##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25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강대식 • 박준태 • 조지연

김선교 · 강선영 · 유용원

서일준 · 성일종 · 백종헌

안철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 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 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 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 항).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1년"을 "18개월"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2회"를 "3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 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   |
|                          | <u>수</u> )            |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u>1년</u> 이  | ②18개월-                |
| 내로 한다.                   |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         | 4                     |
| 간은 <u>1년</u> 이내로 한다. 다만, | <u>2년</u>             |
|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                       |
| 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                       |
|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                       |
|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                       |
| 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                       |
| 기간 이내로 한다.               |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
|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u>2회</u> 에 한 | <u>3</u> ক্র <u>]</u> |
|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         |                       |
| 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          |                       |
| 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                       |

|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 |            |
|------------------|------------|
| 함하지 아니한다.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